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19가단1296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
담당변호사 김철웅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1. 주식회사 C 계좌(D)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5,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주식회사 C 계좌(D) 잔액 8,052,649원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C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의 2019. 1. 12.자 1,000만 원, 2019. 1. 24.자 2,000만 원, 2019. 1.

28.자 2,600만 원의 각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1. 주식회사 C 계좌(D)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5,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위 계좌의 예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C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47,947,3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 담보를 위해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되, B를 대신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B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7. 9. 5. B이 C은행에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B이 2018. 9. 7. 대출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12. 28. C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162,941,4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위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9. 2.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7208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B은 2018. 11. 22. 자신의 채무자인 E 소유의 양주시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H)을 받았으나, 그 후 E와 합의하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E는 B에 대한 합의금으로 B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2019. 1. 12. 1,000만 원, 2019. 1. 24. 2,000만 원, 2019. 1. 28. 2,600만 원(합계 5,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202884호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는데, 2020. 2. 27. 기준 이 사건 계좌에는 8,052,649원의 잔액이 있다. [인정근거] 다통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E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금전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B이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계좌에 합의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C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47,947,351원은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B이 E의 합의금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한 것이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서, B이 이 사건 계좌의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면서 이를 관리해 온 사실, 이 사건 계좌에는 E의 합의금을 비롯하여 B의 사업과 관련한 자금이 입금되었고, 그 계좌에서 B의 장인인 I에게 돈이 송금되거나 B의 가족보험료, 통신요금,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과금, B의 다른 자녀 대학교 학비 등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계좌를 관리, 사용하면서 그 계좌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비, 업무 관련 비용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지출금 중 가족 생활비로 사용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B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으로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999년생인 피고가 가족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E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B과 피고 사이에 그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원고가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B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관리,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B과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B이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제3자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합의금을 받는 등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왔으므로 그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그리고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이 문제되고,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바,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좌 명의인(수탁자)인 피고는 출연자인 B에게 이 사건 계좌의 현재 잔액

8,052,649원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C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합의금 5,600만 원에서 잔액 8,052,649원을 제외한 나머지 47,947,351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점, 이 사건 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의 내역과 사용처, 피고의 나이(1999년생으로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만 19세 정도에 불과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신탁자인 B이 인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그 예금을 직접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액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5,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계좌의 잔액 8,052,649원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C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송현